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84
----------	------

발의연월일 : 2012. 6. 13.

발의자 : 나정숙 · 김철진 · 박은경 · 성준모
윤미라 · 이민근 · 전준호 의원(7인)

1. 제안이유

- 최근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5개년(2008년~2012년) 계획에 따라 정책의 수립·시행에 양성평등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의 제정, 2013년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 성별통계의 작성 및 성인지교육 등 성인지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 현행의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성인지정책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을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서 「안산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명칭 변경
- 나. 제2장 여성정책을 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로 장명을 변경하고 여성정책을 성평등정책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5조)
- 다. 여성발전위원회를 성평등정책위원회로 변경함(안 제7조)
- 라. 여성정책총괄담당관 및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성평등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하고 성평등정책조정회의의 부의장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함.(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 마. 제3장을 성평등정책의 추진으로 개편하여 제1절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성인지 교육,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여성친화도시 등 조항을 신설함.(안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 바. 제3장제2절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에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일·가정 조화 지원을 신설하였음.(안 제32조, 제35조)
- 사. 제3장제3절에 여성폭력의 방지 등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여성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조항을 강화하였음.(안 제37조, 제39조)
- 아. 현행의 제5장여성단체협의회에 관한 장을 조항으로 변경하고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안 41조, 제43조)
- 자. 여성발전기금의 결산 및 보고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기금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심사위원회를 신설함.(안 제50조, 제5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참고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 제2조, 제9조, 제10조,
-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안산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안산시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는 성평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고,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5조(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
3.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4. 여성의 권리보호와 복지 증진 방안
5. 성평등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
6.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계획의 협조) 시장은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성평등정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의 촉진, 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
2.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3. 안산시의회 의원
4. 여성 및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킬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성평등정책책임관 등의 지정)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평등정책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1. 책임관 : 부시장

2. 담당관 : 시의 실 · 과장

② 책임관 및 담당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책임관 등의 임무) ① 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 지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한다.

③ 담당관은 부서의 성평등 업무를 맡아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관 사항의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3. 소관 성평등정책 업무추진 상황의 정리 및 보고

4.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소관 부서의 제도 개선

5.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종합·조정 및 평가

6. 그 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의 추진

제16조(성평등정책조정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책임관 아래에 안산시성평등정책조정회의(이하“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성평등의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2개 부서 이상에 관련되는 성평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성평등 정책의 추진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조정회의 구성 등) ① 조정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은 시장을 제외한 본청·소속기관·구청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조정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조정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조정회의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조정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의견청취 등) 조정회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운영규정) 책임관 및 조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성평등정책의 추진

제1절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제22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 및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성별 통계의 작성) 시장은 시와 산하기관에서 인적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을 분리하여 작성하고 각종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의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통한 성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가사·양육 등에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여성주간행사) 시장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 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여성친화도시) ①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정한다.

제30조(국제협력)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절 여성 참여의 확대

제31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2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3조(공직등에의 참여 촉진)**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4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직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5조(일 · 가정 조화 지원)** 시장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 제36조(성희롱의 방지 등)** ① 시장은 성희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여성폭력의 방지 등)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여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모성 보호의 강화) ① 시장은 모든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여성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가족유형·지역·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혼모, 성매매 피해여성 등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장애인, 북한이탈여성, 결혼이민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관련시설 및 여성단체 지원

제40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관련 시설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여성단체협의회 구성 등) ① 여성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능률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여성단체 활동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여성단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43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안산시여성발전기금

제45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 향상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3. 여성인력의 양성 및 성평등 교육의 추진 지원
 4.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의 추진 지원
 5. 출산·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6.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성평등 촉진과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

제4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적립할 수 있다.

제48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성평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제4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

2. 출 납 원 :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기금심사위원회의 설치 · 구성) ① 시장은 기금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안산시여성발전기금심사위원회(이하 “기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시의원

2.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3. 성평등 관련정책에 관한 의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그 해의 기금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으로 해촉 된다.

제52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로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5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안산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을 준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안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안산시여성상

제54조(안산시여성상)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안산시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제55조(시상인원) 여성상은 5명 이내로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6조(시상시기) 여성상은 매년 여성주간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수상대상자) ① 여성상의 수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의 여성 경영인, 관내에 소재한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여성 중에서 심사·선정한다.

② 이미 여성상을 받은 사람과 「안산시 문화상 조례」,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는 제외한다.

제5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의한 추천권자 또는 각급기관·단체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제59조(수상대상자의 선정) 수상대상자는 안산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제6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학계·예술단체·여성단체의 임원, 여성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그 해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으로 해촉 된다.

제6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진행 및 심사총괄

2. 심사·선정된 수상자의 결정 선언

3. 심사평의 발표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3(간사와 서기) 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장 안산시성차별상담센터

제64조(설치) 시장은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성차별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5조(업무)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차별,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과 양성평등의 교육 및 관련정보 제공

3. 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과의 연계망 구축

4. 성차별 관련 조사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6조(유급상담원) 상담센터에는 2인 이내의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유급상담원의 보수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6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성평등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공직심사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안산시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미 수여된 안산시여성상은 이 조례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은 각각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284
----------	------

제안년월일 : 2012. 9. 19.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성평등정책책임관제 및 성평등정책조정회의, 기금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 위원회를 삭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경제활동 참여촉진 내용을 강화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례제명에 맞게 성평등기금으로 수정하여 조례 개정의 목적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평등정책책임관제와 성평등정책조정회의를 삭제하고 함.
(안 제14 ~ 제21조)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비율 미준수시 그 사유 보고함.
(안 제32조)
-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위한 내용 강화함(안 제34조)
- 안산시여성발전기금을 안산시성평등기금으로 변경(안 제44조)
- 성평등기금에 맞게 용도 변경함(안 제45조)
- 기금심사위원회를 삭제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심의(안 51조)
- 여성상 공적심사를 안산시포상조례 심사로 변경(안 제60조)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284
----------	------

제안년월일 : 2012. 9. 19.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회

1. 수정이유

성평등정책책임관제 및 성평등정책조정회의, 기금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 위원회를 삭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경제활동 참여촉진 내용을 강화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례제명에 맞게 성평등기금으로 수정하여 조례 개정의 목적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평등정책책임관제와 성평등정책조정회의를 삭제하고 함.
(안 제14 ~ 제21조)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비율 미준수시 그 사유 보고함.
(안 제32조)
-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위한 내용 강화함(안 제34조)
- 안산시여성발전기금을 안산시성평등기금으로 변경(안 제44조)
- 성평등기금에 맞게 용도 변경함(안 제45조)
- 기금심사위원회를 삭제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심의(안 51조)
- 여성상 공적심사를 안산시포상조례 심사로 변경(안 제60조)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의 촉진, 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안 제8조제3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
2. 안산시의회 의원
3. 여성 및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
4. 지역 또는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 제14조부터 안 제21조까지를 삭제한다.

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를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4조(종전의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시기,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 제29조를 삭제한다.

안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를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22조(종전의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적극적 조치) 시장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의 장은 어느 한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 제32조를 제23조로 하며, 같은 조 조명 중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를 “시정참여 확대”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안 제33조를 제24조로 하며, 조명 중 “공직등에의 참여촉진”을 “공직 등의 참여촉진”으로 한다.

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인력을 적극 개발·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성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종전의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책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42조를 삭제한다.

안 제43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한다.

안 제5장 중 “안산시여성발전기금”을 “안산시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안 제45조부터 제46조까지를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안 제35조(종전의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안 제36조(종전의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성평등 실현과 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사업
 2. 성평등 촉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3.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안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 (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를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한다.

안 제39조(종전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안 제41조(종전 제50조)제2항 중 “회계연도마다”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한다.

안 제51조를 삭제한다.

안 제52조부터 제58조까지를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로 한다.

안 제59조를 삭제한다.

안 제60조를 제49조로 하고, 제49조(종전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공적심사) 여성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의 심사는 「안산시 포상조례」에 따른 안산시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한다.

안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를 삭제한다.

안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안 제68조를 제54조로 하며, 제54조(종전 제68조)중 “분과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안 제69조를 제55조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상한 여성상은 이 조례에 따라 시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조 중 “제24조”를 “제16조”로 한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4조”를 “「안산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로 한다.

②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4. 안산시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원안	수정안
<p><u>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u> 시는 성평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고,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p><u>제7조(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생략)</u></p> <p>1. 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p> <p>3. 성평등의 촉진, 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p> <p>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p> <p>5. 여성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6.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u><신 설></u></p>	<p><u>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u>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p><u>제7조(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u></p> <p>1. <삭제></p> <p>2. <삭제></p> <p>3. <삭제></p> <p>4. <삭제></p> <p>5. <삭제></p> <p>6. <삭제></p> <p>7. <삭제></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p>

	<p>3. 성평등의 촉진, 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p> <p>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p> <p>5. 여성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p>
제8조(구성 등) ① ~ ② (생략)	제8조(구성 등)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생략)	③ (원안과 같음)
1.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	1.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
2.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2. 안산시의회 의원
3. 안산시의회 의원	3. 여성 및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
4. 여성 및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	4. 지역 또는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의견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 ⑥ (생략)	④ ~ ⑥ (원안과 같음)
제14조 ~ 제21조 (생략)	제14조 ~ 제21조 <삭 제>
제22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분석평가의 시기,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

	<p><u>고하여야 한다.</u></p> <p>④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u>제23조 ~ 제28조 (생략)</u>	<u>제15조 ~ 제20조 (원안과 같음)</u>
<u>제29조(여성친화도시) (생략)</u>	<u>제29조 <삭 제></u>
<u>제30조 (생략)</u>	<u>제21조 (원안과 같음)</u>
<p><u>제31조(적극적 조치)</u> 시장은 어느 한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u>제22조(적극적 조치)</u> 시장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의 장은 어느 한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u>제32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u>	<u>제23조(시정참여 확대)</u>
<p>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시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① ~ ② (원안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u>제33조(공직등에의 참여 촉진)</u>	<u>제24조(공직 등의 참여촉진)</u>
① ~ ② (생략)	① ~ ② (원안과 같음)
<u>제34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u> ① 시	<u>제25조(경제활동 참여촉진)</u> ① 시장은 여

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직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중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일·가정 조화 지원) 시장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 제41조 (생략)

제42조(경제활동의 지원) (생략)

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인력을 적극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책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 제32조 (원안과 같음)

제42조 <삭 제>

제43조 ~ 제46조 (생략)

제5장 안산시여성발전기금

제45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 향상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한다.

② (생략)

제4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3. 여성인력의 양성 및 성평등 교육의 추진 지원
 4.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의 추진 지원
 5. 출산 · 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6.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성평등 촉진과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

<신 설>

제47조 (생략)

제33조 ~ 제36조 (원안과 같음)

제5장 안산시성평등기금

제35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한다.

② (원안과 같음)

제3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성평등 실현과 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사업
2. 성평등 촉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3.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 · 외 연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제37조 (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제38조 (원안과 같음)

제48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성평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제49조 (생략)

제50조(결산 및 보고)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기금심사위원회의 설치 · 구성) (생략)

제52조 ~ 제58조 (생략)

제59조(수상대상자의 선정) 수상대상자는 안산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제6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학계·예술단체·여성단체의 임원, 여성정책에

제3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0조 (원안과 같음)

제41조(결산 및 보고) ① (원안과 같음)

② -----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

제51조 <삭 제>

제42조 ~ 제48조 (원안과 같음)

제59조 <삭 제>

제49조(공적심사) 여성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의 심사는 「안산시 포상조례」에 따른 안산시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한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그 해의 공
적십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으로 해촉 된다.

제61조 ~ 제63조 (생략)

제64조 ~ 제67조 (생략)

제68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성평등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공적십사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 (생략)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안산시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미 수여된 안산시여성상은 이 조례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

<신설>

제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은 각각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신설>

제61조 ~ 제63조 <삭 제>

제50조 ~ 제53조 (원안과 같음)

제54조(수당 등) -----
-----분과위원회

제55조 (원안과 같음)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상한 여성상은 이 조례에 따라 시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4“를 ”「안산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로 한다.

②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4. 안산시여성상 공적십사 위원회”를 신설한다.